은행권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지침

시행 2023. 1. 1. 개정 2024. 7. 1.

본 지침은 금융회사(이하 '회사')가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판매 시(이하 '금융상품')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절차 및 유의사항을 정한 것 입니다.

회사는 본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회사 및 영업점 규모, 고객 특성 및 분포 등을 감안하여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한 적정한 금융상품 판매절차가 수립될 수 있도록 회사별 사정에 맞게 세부내용을 수정·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제정 목적

○ 본 지침은 고령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회사의 기본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고령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

- 금융상품은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는 추세인 반면, 고령금융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쇠약과 더불어 기억력과 이해력이 저하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고령금융소비자들은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거나 생활을 유지하기에 부족할 수 있어, 부적절한 금융거래에 따른 손실이 생계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3. 고령금융소비자의 정의

- 회사는 만 65세 이상을 고령금융소비자로 정의합니다. 다만, 회사는 금융거래 경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정도, 재산 및 소득상황, 직업 등을 토대로 고령금융소비자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 회사는 자체 기준을 정하여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금융상품의 이해 정도가 낮고 과거 금융거래 경험, 재산 및 소득 등이 부족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큰 고령자를 선별하여 동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기준을 적용·운영할 수 있음
 - ▶ 다만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사리분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소비자에 대하여 고령금융소비자에게 적용하는 보호 기준을 준용하는 것을 권고함

4. 고령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원칙

- 회사는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해 강화된 권유 절차를 마련하고 보다 편리한 상담 및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회사는 고령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구매 권유할 때 금융상품 이해 수준, 구매 목적, 구매 경험, 재무 상태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상품을 구매 권유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합리적 사유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연령별 차등이 불가피한 경우 취급 제한·가격 차등화 등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연령별 차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고령자가 금융소외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연령별 차등이 불가피한 사례

- 연령이 금융상품 설계 시 주요 고려 사항이자 가격 결정 시 핵심 요인으로 연령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 방식 등을 차별화할 수밖에 없는 경우
- 연령별 차등을 통해 명백하게 전체 금융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되고 금융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5. 금융거래 단계별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1) 금융상품 '기획·개발 과정'의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 회사는 금융상품개발 관련 체크리스트를 통해 고령금융소비자에 관한 위험요인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 * 예) 고령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고령금융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 만일, 고령금융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회사 판매 정책 등에 반영합니다.

(2) 금융상품 '판매과정'의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 회사는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상품 상담 및 판매 시 내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가급적 쉬운 용어와 느린 속도로 설명합니다.
- 회사는 상담 결과 고령금융소비자의 사리분별 능력이 저하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를 자제합니다.

- ※ 사리분별 능력은 아래 예시 등을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간단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 기억을 잃어버린 듯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
- 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최근의 금융거래내역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
- 회사는 고령금융소비자에 금융상품 권유 시 <붙임>의 '금융 상품 취급 관련 중점 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구조가 복잡하거나 손실 가능성이 큰 금융상품을 '구매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고, '구매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합니다.
 - ※ 일반적으로 "구매권유 유의상품"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예로는 후순위 채권, 파생연계금융상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투자성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권의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보호 기준'(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참고5)에서 정하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준용하며,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험업권의 고령금융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변액보험 관련 내용을 포함합니다.
 - 회사는 임직원이 고령금융소비자에게 '구매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관리직 직원(지점장, 준법 감시담당자 등)이 권유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관리직 직원은 고객과의 직접적인 면담(판매 시 배석 등) 등을 통해 고객의 이해 여부 및 판매 권유의 적정성을 사전 확인하고 확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다른 회사가 개발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구매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이를 회사 판매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고령금융소비자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권유 하여 판매하는 경우 고객의 이해 여부 및 판매 동의 등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고령금융소비자가 내용이 복잡하거나 위험이 큰 금융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가족 등 지정인에게 계약 사실을 안내하는 제도인 '고령층 지정인 계약 사실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내부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적용대상 상품 및 판매채널별 서비스 제공 대상 >

구분	상 품 군	기 타
금융투자 상품	파생결합증권(ELS, DLS)	- 인터넷채널을 통한 모집 계약 제외 - 보험상품 중 월 5만원 이하 계약 제외
	장외파생상품	
	조건부 자본증권, 자산유동화증권, 후순위 채권	
	파생형 펀드, 주가연계펀드 등	
보험 상품	변액보험	

(3) 금융상품 '판매 이후 과정'의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 회사는 다음의 경우 해피콜 등을 통해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향후 분쟁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후 모니터링 내용을 녹음하거나,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령금융소비자 중 만 80세 이상인 고객이 '구매권유 유의상품'을 구매한 경우
 - 고령금융소비자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권유하여 판매한 경우
 - * TM(Telemarketing), DM(Direct Message), 이메일 발송, 디지털 채팅 등
- 회사는 관리직 직원으로 하여금 사후 모니터링의 적정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는 고령금융소비자 중 만 70세 이상인 고객에게 대출성 상품을 판매한 경우, 청약철회 신청방법 및 청약철회 가능 기간 종료일자 등을 청약철회 가능 기간 중 회사가 정한 방법 으로 안내하여야 합니다.

(4) 기타

 회사는 보이스피싱 등 불법 금융사기 피해로부터 고령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 피해 사례 전파, 고령자 금융사기 모니터링 강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6.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

(1) 고령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 강화

○ 회사는 '구매권유 유의상품' 관련 교육 시 고령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완전 판매 가능성에 대한 정기 점검

회사는 감사부서 또는 준법 감시부서 등을 통해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한 '구매권유 유의상품' 중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추출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을 남겨둘필요가 있습니다.

(3) 고령금융소비자 대상 마케팅 활동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회사는 고령금융소비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각종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경우 고령금융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 과장정보, 판매광고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부서 등 통제 부서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마련·준수해야 합니다.

7. 고령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추가 기준

(1) 본사 전담 부서 및 전담인력 지정

○ 회사는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마련을 위한 총괄부서와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 교육 수행 등을 위한 본사내 업무 단위별 전담부서를 지정합니다.

(2) 고령금융소비자 전담창구 마련

- 회사는 고령금융소비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상담과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영업점포와 콜센터에 고령금융소비자 전담창구 및 상담직원을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 ※ 전담창구 및 상담직원의 운영 여부는 영업소(지점) 규모나 인력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전담창구의 상담직원을 통해 상담을 받은 후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안내합니다.
 - ※ 전담관리직원(또는 권유자)이 있는 고객, 전담창구 이용을 거부한 고객 및 다른 창구 이용이 고객에게 보다 용이한 경우에는 예외

(3)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운용

○ 회사는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 향상을 위해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 지침」을 준수하여 모바일 금융 앱을 개발·운용토록 해야 합니다.

붙임: 금융상품 취급 관련 중점 관리 사항. 끝.

금융상품 취급 관련 중점 관리 사항

1. 대출상품

(1) 고령자에게 적합한 상품 권유

 회사는 고령금융소비자와 대출상담 및 접수 시 자금용도 등에 관하여 신청인과 상담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채무 상환능력,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수준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고령금융소비자가 적합한 상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2) 중요 내용 설명의무

- 회사는 고령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금융 상품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참조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설명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유의사항
 - 중도 상환 해약금
 - 지연배상금률(연체이자율) 및 지연배상금(연체이자) 부과 사유
 - 기타 불이익에 관한 중요사항
- o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한 청약 철회의 기한, 행사방법, 효과와 함께 청약철회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 중도상환과의 차이도 설명하여야 합니다.

(3) 정보제공 방법의 적정성

○ 회사는 고령금융소비자가 대출성 상품에 관한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의 글자 크기를 크게 하거나 확대경을 구비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금융투자상품

 회사는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에는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의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보호 기준'관련 내용을 준용합니다.

3. 보험상품

○ 회사는 보험상품 판매 시에는 보험업권의 고령금융소비자보호 가이드 라인의 판매("상품 가입")관련 내용을 준용합니다.